

##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1일

고흥군의회의장



### 1. 개정이유

-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.

### 2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「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」 로 조례안 개정 (안 제4조의제1항)

### 3. 예고기간

- 2021. 6. 1. ~ 2021. 6. 7. (7일간)

### 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. 6. 7.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
- 전 화 : 061-830-6065 (FAX 061-830-5595)

-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#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연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1. 5. 28.

발의자: 이연숙·이재학·박미옥·  
류동철 의원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4조의제1항**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.

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.

다만, 행정사무감사는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정례회의 안건처리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.</p>	<p>제4조(정례회의 안건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다만, 행정사무감사는 천재지변 및 재난 재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의 결로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.</p>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내 용	의 견	비 고